

# 『2026년 서울시 기후테크기업 IR 컨설팅 및 해외 투자상담회』 참여기업 모집

국가녹색기술연구소 서울기후테크산업지원센터에서는 서울시 소재 기후테크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해외 진출과 투자 유치를 지원하여 기업의 판로 개척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

## 1 사업개요

- (사업명) 2026년 서울시 기후테크 기업을 위한 IR 컨설팅 및 해외 투자상담회
- (사업기간) 2026. 6월 ~ 2026. 10월
- (사업내용) 우수한 기후테크 기술과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·수출을 지원하여 판로개척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성과 관리
- (모집대상) 서울시 소재 기후테크\* 기술 또는 제품을 보유하며,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(업력 무관)
  - \* 기후기술법 '기후변화대응 기술 세부내용 고시 38대 기술' 에 해당하는 기술(공고문 부록 참조)
- (지원규모) 11개사
- (지원방식) 교육 프로그램 참여, 해외 출장 시 통역 및 경비 지원
- (선정방법)
  - (서면심사) 지원자격 확인 및 제출서류 서면평가
    - ※ 사회적 기업, 여성기업, 장애인 기업, 청년 창업 기업, 고령자 친화 기업일 경우 예선 가점 부여
  - (결과 발표) 각 단계별로 선정기업에 한 해 개별 연락

## 2 추진일정

일정	추진절차	비고
6월 8일~6월 26일	· 2026년 기후테크기업 IR컨설팅 및 해외 투자상담회 참여기업 모집	
6월 27일~7월 3일	· 서면심사 (적격심사, 서면평가) 진행 - (결과발표) 선정 기업에게 개별 연락	
7월~9월	· 선정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IR 컨설팅 수행	
7월	· 해외 투자유치 준비 및 지원을 위한 세미나 진행	
9월 초	· 현지(중국 항저우) 해외 투자상담회 개최	
10월	· 해외 투자상담회 후속 교육 프로그램 개최	

※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# 3 신청자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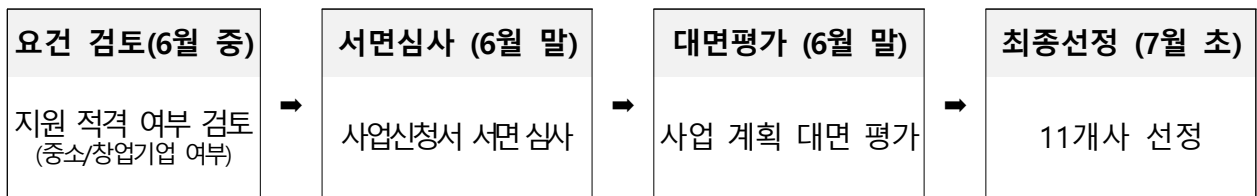
- (지원대상)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중 우수한 기후테크 기술 및 제품 보유 기업
  - (소재지\*) 공고일 기준 본사 및 지점, 지역지사, 연구소 등 모두 해당
    - \*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 주소와 동일
  - (업종) 「기후기술법」 ‘기후변화대응 기술 세부내용 고시’를 활용한 기후기술 분류체계\*에 해당하는 제품
    - \* 공고문·신청서 부록 참조
- (유의사항) 선정 이후 지원되는 세미나, 교육 및 해외 투자상담회는 대표자 참석이 필수이며, 대표자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 협의 후 임원급 관계자에 한하여 참석을 인정함

## 4 | 평가 및 선정방법

### ○ (평가내용)

- 기후위기 대응(온실가스 감축, 기후변화 적응 등)에 효과적인 기술
- 보유 기술 및 제품이 투자 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며 해외 진출 가능성이 있는 사업모델

### ○ (선정절차)



※ 상기 평가단계는 신청 규모에 따라 서면 또는 대면 심사만 진행될 수 있으며, 평가 대상 기업 및 최종 선정기업은 별도 연락 예정(추진 일정은 향후 변동될 수 있음)

### ○ (평가방법)

- 서면심사 지원자격 확인 및 제출서류 평가
  - (적격심사) ① 본사, 지사, 연구소 등의 사업장 주소, ② 필수서류 제출 여부 등 적합여부 평가
  - (서면평가) 참가신청서, 회사소개서 토대로 평가 진행

### ○ (평가위원) 기후/IR 및 해외진출 분야 관련 내·외부 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

### ○ (선발\*) 전문가 평가 점수 중 최고점, 최저점 제외 후 합산 평균

\* 동점자의 경우 사업 계획 필요성 > 사업 확장성 > 기술적 우수성 > 지속가능성 항목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

○ (평가지표)

평가항목	세부내용	점수
사업 계획 필요성	· (중요성) 대상 기후문제의 심각성 및 해결의 시급성(시의성) · (영향범위)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달성에 대한 기여도	30
사업 확장성	· (적합성) 계획의 구체성 및 수요기업(기관)의 사업 확장 의지 · (시장성) 시장 진출 가능성, 사업영역 확장 가능성	30
기술적 우수성	· (기술개발역량) 기술 개발을 위한 인적·기술적·조직적 역량의 우수성 · (경쟁력) 기술개발을 통한 기후문제 해결 기여도, 기술적 장점 및 우위성	20
지속가능성	· (환경적 기여)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데 긍정적으로 미치는 영향 · (사회적 기여) 대상 과제 수행이 사회적 또는 산업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	20
(가점)	· (대상) 사회적기업, 여성기업, 장애인기업, 청년창업기업, 고령자친화기업 · (적용) 총점(100점) 내 평가항목 합산, 초과 시 미반영	(5)

**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**

○ (신청기간) 6월 8일 ~ 6월 26일

○ (신청방법) 구글 폼을 이용한 온라인 접수

\* 구글폼 링크 : <https://forms.gle/6QSPB62qVZyqGRav9>

- 신청서 양식은 함께 홍보되는 양식 활용
- 제출 전 서류확인 요망 (제출서류 누락 접수되는 경우 선정 과정에서 미선정될 수 있음)
- 신청 마감 시간을 고려하여 미리 제출할 것을 권고

○ (제출서류) 필수제출 서류를 포함하여 해당하는 서류 일괄 제출

구분	목록	필수여부
양식	[양식 제1호] 참가신청서	필수
	[양식 제2호] 개인·기업 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	필수
그 외	[첨부] 회사소개서(IR 자료) 1부	필수
	[첨부] 사업자등록증 1부 ※ 서울시 소재의 본사, 지사, 연구소 등의 사업장 주소 반영 必	필수
	[첨부] 최근 2개년 감사보고서(또는 재무제표증명원) 1부	필수
	[첨부] 4대 사회보험가입자명부 1부	필수
	[첨부]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	필수
	[첨부] 가점 증빙서류 - 사회적 기업, 사회적 협동조합, 여성기업, 장애인기업, 청년 창업기업, 고령자 친화 기업	해당 시

○ (문의처) 제타플랜인베스트 컨설팅본부 사업 담당자

- 이메일 : bkh@zetaplan.co.kr
- 연락처 : 070-8129-5884

○ (유의사항)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**부록**

**기후변화대응 기술 세부내용 고시 활용 기후기술 분류**

대분류	중분류(모집단 표본설계 대상)		기술 세부내용 고시 (소분류 수준)	기술 정의
	법항목	중분류(안)		
01. 감축 (규칙 제2조 제2조)	(규칙 제2조 1항 제1호)	01. 태양광.열(1,640)	01. 태양광 기술	·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이용하여 빛을 흡수해서 직접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
			02. 태양열 기술	· 태양복사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변환·이용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기술
		02. 풍력(318)	03. 풍력 기술	·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
		03. 해양 및 수력에너지 (184)	04. 해양에너지 기술	· 해양의 조류, 조력, 파력 온도차 또는 염분차 등을 이용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기술
			05. 수력 기술	· 물이 가지는 위치에너지나 운동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
		04. 수열 및 지열(175)	06. 수열 기술	· 해수 표층 및 하천수의 열을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
			07. 지열 기술	· 지하수 또는 지하의 열 등의 온도차를 이용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기술
		05. 바이오(187)	08. 바이오에너지 기술	· 바이오매스(유기성 생물체의 총칭, 이하 같다)에 저장된 화학에너지를 직접 사용하거나 연료로 변환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기술

		06. 수소암모니아(197)	09. 수소·암모니아 발전 기술	· 수소 또는 암모니아를 이용하여 전기화학반응 또는 연소반응 등을 통해 전기 및 열을 생산하는 기술
		07. 비재생에너지(334)	10. 석탄액화·가스화 기술	· 석탄 등의 원료를 액화 또는 가스화하여 얻어지는 에너지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기술
			11. 원자력 기술	· 핵분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, 열 또는 수소 등을 생산하는 설비인 원자력 시스템을 개량하는 기술 · 안전성·경제성·환경친화성을 가진 원자력 시스템을 설계·건설 또는 운영하는 기술
			12. 핵융합에너지 기술	· 핵융합 과정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기술
	(규칙 제2조 1항 제2호)	08. 수소바이오매스(338)	13. 수소 기술	· 물, 유기물, 화석연료 등을 이용하여 수소를 생산하고, 이를 저장·운송하여 활용하는 기술
			14. 바이오매스 기술	· 경제적으로 대량 확보한 바이오매스를 생물학적, 화학적 또는 물리적 변환과정을 통하여 수송용 연료로 활용하거나, 화학연료 또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
		09. 폐자원(1,093)	15. 폐자원 기술	· 폐기물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기술 · 생활·산업·농업·수산업·축산업·임업 분야의 폐기물이나 활용가치가 적어진 폐자원 등을 유용한 연료·원료로 전환 또는 활용하는 기술
	(규칙 제2조	10. 발전효율(828)	16. 발전효율 기술	· 기존 발전시스템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

	1항 제3호)			· 발전과정에서 신기술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
		11. 산업효율(3,477)	17. 산업효율 기술	· 산업공정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절감하거나 저탄소고효율의 신공정을 개발·적용하는 기술
		12. 수송효율(1,031)	18. 수송효율 기술	· 수송 모빌리티(승용·상용차, 철도, 선박, 항공기 등)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거나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기술
		13. 건물효율(961)	19. 건물효율 기술	· 건물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절감 및 효율 향상에 필요한 외피나 설비 관련 기술 또는 ICT 기반 운영기술
(규칙 제2조 1항 제4호)	14. 포집/저장/흡수/대체 (345)	20. 이산화탄소(CO2) 포집·저장·활용 기술		·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지중 저장소에 격리하는 기술이나 또는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직접 활용하거나 유용한 화학물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기술
		21. 메탄(CH4) 처리 기술		· 축산, 농업 등에서 배출된 메탄을 포집하여 연료 또는 유용한 화학물로 전환하여 활용하거나 메탄 발생 자체를 저감시키는 기술
		22. 기타 온실가스 처리 및 대체 기술		· 이산화탄소, 메탄 외의 온실가스를 처리 또는 재활용하거나 온실가스가 아닌 가스로 대체하는 기술

			23. 탄소흡수원 기술	· 육상 또는 해양 생태계에 대기 등 외부로부터 유입된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기술
	(규칙 제2조 1항 제5호)	15. 전력통합(1,177)	24. 전력 통합 기술	· 기존의 전력망(grid)에 분산전원과 정보통신기술(ICT)을 통합하여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전력망 기반의 전력 네트워크 기술
			25. 열 통합 기술	· 다양한 열원의 활용 및 저장 기술 · 효율적인 열 공급 기술 · 공급자와 사용자 간의 양방향 열거래 등을 포함한 열 네트워크 기술
			26. 전력-비전력 부문간 결합 기술	·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생산된 전기를 열, 가스 또는 연료·원료 등의 형태로 전환하여 저장하거나 사용하는 기술
02. 적응 (규칙 제3조 제3호)	(규칙 제3조 1항 제1호)	16. 기후변화 모니터링 (138)	27. 기후변화 감시 및 진단 기술	· 지구시스템(대기, 해양, 지면, 빙권, 식생 등)의 다양한 기후환경 요소를 관측하고 분석하는 기술 · 현장 관측 또는 위성, 항공, 부이 등의 원격관측 기법을 활용하여 기후변화를 감시하는 기술

				· 이상기후와 자연재해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감지하는 기술
			28. 기후변화 예측 기술	· 미래 사회·경제 변화와 기후 특성을 고려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기술 · 미래 기후환경 요소(기온, 강수량, 해수면 등)를 예측하고, 예측 결과를 평가하여 정확도를 향상하는 기술
(규칙 제3조 1항 제2호)	17. 기후영향평가 및 진단(53)	29. 기후변화 영향 평가 기술	· 기후변화가 다양한 부문(건강, 물, 국토·연안, 농수산, 생태계, 산업 등)과 계층,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·부정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조사·분석하는 기술	
		30. 기후변화 취약성 및 위험성 평가 기술	·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한 다양한 부문(건강, 물, 국토·연안, 농수산, 생태계, 산업 등), 계층, 지역의 취약성(노출, 민감도, 적응능력 등 고려)과 위험성(위해성, 노출성, 취약성 등 고려)을 과학적으로 분석·평가하는 기술	
(규칙 제3조 1항 제3호)	18. 건강(213)	31. 건강 부문 기술	· 기후변화로 인하여 개인과 집단에 증가하거나 악화될 수 있는 감염병 및 급성·만성 질환을 예방하고, 피해를 줄이는 기술 · 기상재해로 인하여 개인과 집단에 발생할 수 있는 외상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는 기술	

		19. 물(1,796)	32. 물 부문 기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기후변화로 인하여 개인과 집단에 증가하거나 악화될 수 있는 감염병 및 급성·만성 질환을 예방하고, 피해를 줄이는 기술</li> <li>· 기상재해로 인하여 개인과 집단에 발생할 수 있는 외상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는 기술</li> </ul>
		20. 농축수산(948)	34. 농축수산 부문 기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기후변화로 인한 농·축·수산물의 생산성 변화 및 공급 변동에 대응하는 기술</li> <li>·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에 대한 농축산·양식시설의 취약성과 위험성을 보강하는 기술</li> </ul>
		21. 기타 탄력성 강화 (380)	33. 국토·연안 부문 기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기후변화에 대처하여 사회기반시설, 생활기반시설을 포함하는 건축물과 도시, 국토·연안공간의 기능 및 성능을 유지·강화하는 기술</li> <li>· 자연재해(홍수, 폭염, 한파, 태풍, 해일 등)로 인한 직접 및 연계피해에 대응하는 능력을 확보하고 회복력을 강화하는 기술</li> </ul>
			35. 산림·생태계 부문 기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산불·산사태 등의 자연재해 피해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는 기술</li> <li>· 생태계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기술</li> </ul>
			36. 산업·에너지 부문 기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산업·에너지시설과 해당 분야 가치사슬에 포함되는 산업 공정 전과정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직접·간접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기술</li> </ul>
(규칙 제3조)	22. 적응기반(99)	37. 적응조치의 효과평가 기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기후변화 적응 기술 및 정책의 효과를 검증·분석·평가하는 기술</li> </ul>	

				· 기후변화 적응 효과를 예측하는 기술
	1항 제4호)		38. 기후변화 적응기반 기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기후변화 적응 정보(통계 및 공간정보 등)를 생산·축적·검증 및 활용·확산하는 기술</li> <li>· 기후변화 적응의 인식을 개선하고, 기후변화 적응 교육에 기여하는 기술</li> </ul>